

남북 과학기술 기본법제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Fundamental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outh and North Korea

윤 종 민*

국문요약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짐에 따라 각 국가들은 그에 대한 정책과 관련제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남북한 역시 1990년대 후반부터 과학기술을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취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개편과 관련법령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논문은 남북 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기본법제의 운영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남북 과학기술 협력 활성화 및 향후의 관련법제의 통일화에 대비한 양 법제간의 정합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 헌법상의 과학기술 관련규정과 과학기술에 관한 총괄규범으로서 기능하는 남한의 과학기술기본법과 북한의 과학기술법에 대하여 그 규정체계와 내용을 개관하고 상호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핵심어 : 과학기술기본법, 헌법, 남북, 법제비교연구, 과학기술정책과 법

Abstract

Recently, according as the weigh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national development has been more increased, each nation have consolidated policies and legal system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South and north korea have also treated science and technology as an important matter, and have continuously conducted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framework and related law and regulation since the latter of 1990's.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useful reference materials in policy-making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application state of the fundamental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outh and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after reviewing the structure and content not only of the provisions about science and technology in constitutional law but also the general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outh and north korea, compare and analyz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hem.

Key words : Fundamental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Constitutional Law, South and North Korea, Comparative Study of Law, S&T Policy

I. 머리말

과학기술은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국방 등 국가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과학기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자국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함은 물론, 각 기술혁신 주체들의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나 북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국정목표의 하나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천명하고,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제 신설, 과학기술 부총리제 도입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등 각종 과학기술제도와 행정체계를 개편한 바 있으며,¹⁾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 등 과학기술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북한도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개선 전략과 방침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즉,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힘 있는 추동력”으로 간주하고 과학기술 개선을 위한 각종 체제의 개혁과²⁾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기술 관련 법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³⁾

이 논문은 이와 같이 남북이 모두 과학기술을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취급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관련법제의 운영상황을 상호 비교·분석해봄으로써, 남북 과학기술협력의 활성화 및 향후의 관련법제의 통일화에 대한 양 법제간의 정합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정한 ‘과학기술 기본법제’⁴⁾의 주요체계와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북 헌법상의 과학기술 관련규정 및 과학기술에 관한 총괄 규범으로서 가능하는 우리의 과학기술기본법과 북한 과학기술법의 주요 변천과정과 규정내용을 개관한 다음, 양 법제를 주요 과학기술정책 및 규정요소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유사

- 1) 참여정부의 국가과학기술제도 및 행정체계의 개편방향과 내용에 관하여는 오세정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재구축과 향후 전개방향”,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재구축과 과학기술부의 기능개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중앙일보 공동주최,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2004.3.4 참조.
- 2) 북한의 과학기술체제의 개혁동향에 관하여는 이춘근,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개혁”, 「북한과학기술연구」(제2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4.3, 257면 이하 참조.
- 3)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과 과학기술법제의 정비에 관하여는 박정원,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과 과학기술법”, 「북한과학기술연구」(제4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6.3, 29면 이하 참조.
- 4) 이 글에서 ‘과학기술 기본법제’라 함은 국가의 과학기술에 관한 총괄적이고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을 정한 법제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의 기본질서와 이념을 정한 헌법상의 규정과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한 총괄규범의 성격을 가진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법의 규정을 총칭하는 의미로 개념 정의하고자 한다.

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입법 정책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검토하며 결론을 맺는다.

II. 남북 헌법상의 과학기술 관련규정

1. 개 설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의 목표와 이념은 그 나라의 헌법을 통해 규정된다. 헌법은 한 나라의 기본질서와 가치를 담고 있으며,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규범이자 각종 법령의 최상위에 위치하는 최고규범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각종 법령은 헌법상의 과학기술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화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의 기본정신과 정책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남북 헌법상의 과학기술 관련 조항의 변천과 현행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본다.

2. 우리 헌법상의 과학기술 관련규정

1) 과학기술 헌법조항의 발전

1848년에 제정된 우리헌법은 그동안 9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⁵⁾ 우리 헌법상 국가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직접 규정된 것은 1962년의 제5차 개정헌법이 처음이었다. 즉, 동 제118조⁶⁾에서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둔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명문화하였다. 그 전까지는 경제질서의 기본원칙과 국민경제발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5) 현행헌법은 헌법전문과 본문 10장 130개조 및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7.10.29 개정 공포되고 1988.2.25 발효되었다.

6) "제118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둔다.
 ② 경제·과학심의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경제·과학심의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규정하고 있었다. 동 규정은 1972년 제7차 개정헌법⁷⁾에서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 창달·진흥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경제·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다 더 구체화되었으며, 1980년의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현재의 규정으로 발전되었다.

한편 헌법상 ‘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된 것은 1987년의 제9차 개정헌법에서 그동안의 “저작자·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헌법제정 당시의 규정이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로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과학기술 관련규정의 체계와 내용

현행 헌법상 과학기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정은 적지 않다. 특히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조항과 경제헌법조항 전체는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제 생활의 질서유지와 보호,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의 생존배려와 생활급부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직접 명시하거나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 과학기술의 진흥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경우에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제2장의 일부조항과 국가의 경제질서에 관한 제9장의 일부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의 기본권에 관한 장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개인의 학문연구의 자유 및 과학기술자 등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제22조), 제9장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는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국가의 각종 시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국민경제발전 노력의무(제127조 제1항), 국가의 표준제도 확립(제127조 제2항) 및 국가과학기술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의 설치(제127조 제3항)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국가의 직접적인 책무 외에도 과학기술진흥과 밀접하게 관련된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제123조 제1항), 지역경제육성(동 제2항), 중소기업의 보호·육성(동 제3항),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제120조 제2항), 대외무역 육성(제12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7) “제12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 창달·진흥되어야 한다.

② 대통령은 경제·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3. 북한 헌법상의 과학기술 관련규정

1) 북한헌법과 과학기술규정

북한의 현행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1972년의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알려진 바와 같이 1992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⁸⁾ 북한의 현행 개정헌법은 정치적으로는 김일성 유일영도체제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김정일 체제의 출범을 의미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북한의 낙후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법적 대응책의 마련과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98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보장(제16조), 외국기업과의 합영·합작사업의 장려(제37조) 등 자본주의적 경제 원리와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대외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⁹⁾

특히 동 헌법 개정은 과학기술 측면에서 보면, 기술개선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 등 ‘과학기술 중시사상’을 대내외에 표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술혁명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3대 혁명의 하나로 선언하고(제9조), 기술발전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도록 명시(제27조)하는 등 과학기술조항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조항은 과학기술발전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북한당국의 정책기조와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과학기술 관련규정의 체계와 내용

현행 북한 헌법상의 과학기술진흥과 육성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규정은 정치에 관한 제1장, 경제에 관한 제2장, 문화에 관한 제3장 및 공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5장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장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3대 혁명의 하나인 과학기술혁명의 완수를 규정하고(제9조), 제2장에서는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 제고(제23조), 인민경제의 과학화 추진(제26조),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의 추진 및 대중적 기술혁신운동 전개(제27조), 농촌기술혁명의 추진(제28조), 경제의 과학적 관리·운영(제33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기술교육의 조화적 실시 및 과학기술의 인력양성(제44조 내지 제46조), 과학기술의 주체성 확립(제50조), 국가의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제51조)을 규정하

8) 현행 북한헌법은 헌법서문과 본문 7장 16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헌법과 달리 부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9) 박정원, 북한 김정일체제의 법제정비 현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2, 11면 이하 참조.

고, 제5장에서는 공민들의 과학과 문화예술 활동의 자유(제74조 제1문)와 발명가 등의 배려와 특허권 등의 권리보호(제74조 제2문)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상의 과학기술 관련 규정은 우리에 비해 각 부문에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남북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법의 체계와 내용

1. 개 설

헌법에 규정된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의 기본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소위 '과학기술법'¹⁰⁾이다. 과학기술법은 그 목적과 규율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과학기술의 행정체계와 조직구성에 관한 법,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각종 연구개발의 추진과 관리에 관한 법,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 과학기술투자 및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법, 지적재산 등 과학기술의 성과를 보호·관리하고 이용을 촉진하는 법, 과학기술의 폐해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¹⁾ 현재 과학기술관련법은 약 1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들은 모두 헌법상의 과학기술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법 간에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있어서도 총괄적으로 연계·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전체 과학기술법의 원칙규범 내지 총괄규범으로서 기능하는 법을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¹²⁾ 한 나라의 과학기술에 관한 법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의 과학기술기본법과 북한의 과학기술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남과 북의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법의 발전과정과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10) '과학기술법'의 의미에 관하여는 아직 학문적으로 완전히 정립된 것이 아니고 학자에 따라서도 그 정의하는 바가 다르지만, 대체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 '자연과학적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산업적 활용촉진에 관한 법', '과학기술의 진흥과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 등으로 개념 정의되고 있다.

11) 이경희외, 과학기술혁신과 법, 세창출판사, 2001, 11-13면 참조.

12)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와 같은 과학기술 정책이념의 설정과 과학기술관련법들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데 있었다(이경원,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추진경위와 주요쟁점", 한국기술혁신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9, 394면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공청회 자료집, 2000.6.1, 1면 이하 등 참조).

2.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본법의 체계와 내용

1) 법의 제정 및 발전연혁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정책추진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정한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2001.1.16 법률 제6353호로 제정되어 2001.7.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5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 법 제정의 기본취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념과 철학을 정립하고,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 특히, 그동안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총괄법으로 기능해온 과학기술진흥법(1967.1.16 제정, 법률 제1864호)과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1997.4.10 제정, 법률 제5340호)¹³⁾이 시대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기본법으로서의 범부처적인 종합조정기능과 과학기술 관련법들과의 연계기능이 미흡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⁴⁾

이전의 과학기술진흥법은 1960년대에 들어와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정책당국에 의해서 인식됨에 따라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기구의 자연적인 과학기술진흥활동을 장려·육성하는 등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행정제도 및 재정 면에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적 태세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과학기술진흥법이 종합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추진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이유에서, 정부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 지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며 과학기술자의 사기를 양양하는 등 종합적인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¹⁵⁾ 이 법들은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될 때까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¹⁶⁾

한편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그 중 과학기술정책추진체계와 내용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2004.9.23 법률 제7218호로 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등 과학기술행정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과 이와

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당초에 그 시행일인 1997.7.1부터 2002.6.30까지 5년간의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2001.1.16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어 약 3년 6개월간 시행되었다.

14) 이경원, 앞의 자료 및 과학기술부, 앞의 공청회 자료 같은 면.

15) 이경희외, 과학기술법제정사-한중일 교류를 중심으로-, 세창출판사, 2004, 39면 및 68면 참조.

16) 위의 책, 33면.

관련된 산업·인력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등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과학기술혁신관련 산업·인력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방향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제7조 제3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과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다(제9조 제2항).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신설하여 부총리인 과학기술부장관이 되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부의 본부장이 되도록 하였으며(제9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제21조 제4항) 등이다.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정책 기능의 위상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조정체계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주요 법률체계 및 규정내용

우리나라의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본문을 기준으로 총 5장 3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별 주요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은 ‘총칙’에 관한 장으로서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제1조 및 제2조), 과학기술 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국가 등의 과학기술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제4조) 및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에 관한 장으로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제8조)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제9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장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에 관한 장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기본방향(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및 관련 예산의 심의와 조정(제12조),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술예측과 과학기술의 수준평가(제13조 및 제14조), 기초과학의 진흥(제15조), 민간기술개발의 지원과 산학연 협동연구의 촉진 (제16조 및 제17조), 과학기술의 국제화와 남북 과학기술협력(제18조 및 제1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에 관한 장으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투자의

확대 및 이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기금의 설치와 사용(제21조 및 제22조), 과학영재 및 여성을 포함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제23조 내지 제25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은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에 관한 장으로서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제26조), 국가과학기술표준체계의 확립(제27조),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제29조), 과학기술 문화의 창달과 과학기술인 우대(제30조 및 제31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 연구·교육기관의 육성 및 지원(제3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북한의 과학기술법의 체계와 내용

1) 법의 제정 및 발전연혁

북한도 우리의 과학기술기본법과 같은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정한 과학기술에 관한 일반법 내지 기본법으로서 '과학기술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법은 과학기술정책의 강화와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법은 1988.12.1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4호로 채택되었으며, 지금까지 1999년, 2004년 및 2005년 등 3차례에 걸쳐 수정 보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¹⁷⁾ 이 가운데 1999년과 2004년의 개정내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¹⁸⁾

1999.5.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77호로 수정·보충된 1999년의 법개정은 김일성시대에 제정된 것을 김정일시대에 개정한 것으로서, 북한이 대내외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 부문에 걸쳐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가운데 나온 과학기술분야의 정책강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일정권 출범이후 1998년의 헌법개정과 함께 많은 법령들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법도 개정되었는데, 이는 북한이 경제회생 정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2004.12.2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6호로 수정·보충된 2004년의 법개정은

17) 북한에서의 각종 법률(부분법)의 제정과 수정보충은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 확정하지만(북한헌법 제91조),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중인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바(북한헌법 제106조), 1988년의 제정은 최고인민회의 회기 중에 상설회의 결정을 통해, 1999년·2004년·2005년의 수정보충은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각각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18) 2005년도의 개정(2005.12.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437호)의 주요내용은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의 조직을 기존의 도(직할시) 단위에서 시(구역) 단위까지 확대하고(제35조 2항), 동 도입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존의 기업소·단체의 선진기술도입 등에 관한 업무 외에 발명이나 창의고안에 관한 업무까지 추가(제36조)한 부분개정이다.

19) 박정원, 앞의 논문, 41면 참조.

전면개정의 수준으로 기존에 없었던 조의 제목을 설정하는 등 규정내용을 체계적으로 보완 개편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였다. 즉, 과학기술발전의 주체적 입장구현 원칙(제3조), 과학기술에 의한 경제발전과 인민경제의 현대화·정보화의 구현(제5조 및 제7조), 과학연구 기관의 조직과 운영(제17조 내지 제20조), 과학기술 수준평가를 위한 통계지표설정과 과학 기술연보의 작성(제33조)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특히, 기존의 '제5장 기술관리'에 관한 내용을 대폭 축소하고, 그 대신 제5장을 '과학기술의 인재양성과 장려'에 관한 장으로 하여 과학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의 정비 및 과학기술자에 대한 책임과 우대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제41조 내지 제48조). 이는 과학기술발전의 핵심기반인 창조적 인재의 양성과 활용에 관한 정책을 크게 강화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2) 주요 법률체계 및 규정내용

북한의 현행 과학기술법은 총 7장 6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와 달리 부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 장별 주요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우리의 총칙과 같은 '과학기술법의 기본'에 관한 장으로서 법의 사명(제1조), 과학기술의 중시와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주체성 확립,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원칙 등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사항(제2조 내지 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과학기술발전계획'에 관한 장으로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의 수립 체계와 절차(제9조 내지 제14조),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실행과 관리(제15조)를 규정하고,

제3장은 '과학기술사업의 조직'에 관한 장으로서 과학기술사업 추진의 기본방향(제16조), 연구기관·설계기관·정보기관 등 각종 과학연구 및 지원기관의 설치와 운영(제17조 내지 제21조), 단위 기관 및 기업소 등의 경영평가 및 기술관리 활동의 강화(제22조 및 제23조),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술개선 및 기술혁신운동의 전개(제24조 내지 제27조), 단위기관의 연구중심조직의 운영과 연구기관 사이의 공동·협동연구의 강화(제28조 및 제29조), 주요 과학지구 및 대학 등 단위기관내의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의 창설(제30조), 선진과학기술의 도입과 국제협력(제31조 및 제32조), 과학기술통계지표의 분석과 연보작성(제33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과학기술심의와 도입'에 관한 장으로 새로운 기술개발 과제의 선정 및 발명·특허 등 기술적 성과의 심의와 선진기술의 도입 등 과학기술심의와 도입을 위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제35조 및 제36조), 그 절차와 방법(제37조 내지 제40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은 '과학기술의 인재양성과 장려'에 관한 장으로 과학자 및 기술자의 양성과 자질제

고를 위한 교육훈련(제42조 및 제43조), 과학기술자의 자격사정 및 학위수여(제44조 및 제45조), 과학기술자의 역할제고와 우대(제46조 내지 제48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6장은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에 관한 장으로서 과학기술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투자(제49조),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설비·자재·인력 등의 적정배치와 공동 활용(제50조 내지 제52조), 과학기술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제53조) 등을 규정하고,

제7장은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관한 장으로서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기관의 역할과 임무(제57조 및 제58조),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주체와 대상(제59조), 과학기술사업 관련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와 처벌(제60조 내지 제6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IV. 양 법제의 비교와 분석

지금까지 남북 헌법상의 과학기술 관련규정과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남한의 과학기술기본법과 북한의 과학기술법의 주요 체계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남북 과학기술 기본법제 상호간의 주요 특성 및 정합 가능성을 탐색해보기 위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과학기술에 관한 헌법규정 비교

1) 국민의 과학기술자유와 권리보장

과학기술에 관한 국민의 자유 및 권리의 보장과 관련하여 우리헌법은 제22조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규정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연구의 자유²⁰⁾를 보장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에 관한 저작활동, 발명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등으로부터 발생된 개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북한헌법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북한헌법 제74조에서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리고, “저작권

20) 과학기술 학문연구의 자유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리탐구의 자유로서 학문연구의 자유, 학술활동의 자유, 학문기관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과학기술 연구자들은 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연구, 과학기술 학술활동, 과학기술 학문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있어서 국가나 제3자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535면 이하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392면 이하 등 참조).

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¹⁾ 따라서 과학기술에 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장은 외형상 남과 북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는데 비해, 북한 주민의 과학기술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계획과 통제 하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보장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의 과학기술정책목표와 방향

국가의 과학기술진흥 및 육성과 관련하여 우리헌법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고(제127조 제1항),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하며(동 제2항),²²⁾ 국가과학기술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동 제3항)²³⁾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의 진흥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민주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국가의 직접적인 형성·계획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²⁴⁾ 즉, 현대의 복지사회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물질적 기초의 확립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좌우되는 바, 국가는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의 생존배려 또는 생활 급부를 보장해야 함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21) 북한의 발명특허권은 1967년에 제정된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동 규정은 1978년과 1986년에 각각 개정됨)에 따라 발명권·특허권 및 창의고안권으로 보호하고 있었으나, 1998년에 “발명법”이, 2001년에는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이 각각 제정되어 현재는 발명과 창의고안이 독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법제정 초기에는 외국인만이 특허권을 가질 수 있었으나, 1986년의 법개정으로 북한주민도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개인이 사업소와 특허권에 관한 계약을 맺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윤권순, ‘북한의 연구개발투자성과에 대한 보호제도’, 「북한과학기술연구」(제2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4.3, 297-319면 참조. 한편, 저작권에 대하여는 2001년 3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1호로 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여 관리·보호된다.

22) 국가표준이라 함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을 의미한다(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1호). 이에 따라 국가는 각 분야의 표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법제상, 재정상, 기타 필요한 행정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이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제정되고(1991.3.8 제정, 법률 제4361호), 그에 의거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동 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등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과 국가과학기술분야의 제도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한편 현행 법률은 참여정부에 들어와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4.3.22 전면 개정되었는 바, 그 주요내용은 i) 그동안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수행하던 자문회의 의장직을 대통령이 직접 수행하되, 부의장(1인) 제도를 도입하며, ii)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위원수를 기존의 11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대폭 확대하며, iii) 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기존의 과학기술부 차관에서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변경한 것 등이다.

24) 김재호, “과학기술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원자력법령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제9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132면 참조.

북한헌법도 우리와 같이 국가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헌법상의 과학기술육성정책의 특징은 우리와 달리 과학기술을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규정내용에 있어서도 순수한 경제 외에 정치·문화적 측면에서의 과학기술이념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공화국은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하도록 규정하여(제9조) 기술혁명을 사상·문화혁명과 함께 북한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3대혁명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제23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로서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 있게 벌려”나아감은 물론(제27조),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도록 규정(제28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북한경제를 조속히 회복하고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밀접히 결합”시키도록 하고(제44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이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6조). 또한 “과학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옮겨”세우고(제50조),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율을 세우며 과학자·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규정(제51조)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의 확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기술문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기술교육을 통한 과학기술자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남북 헌법상의 과학기술정책 목표가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있음은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책의 기본이념 및 가치와, 정책실현을 위한 구체적 규정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현대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한다면 북한은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한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과 관련한 세부 규정내용에 있어서도 북한헌법은 우리헌법에 없는 과학기술혁명의 추진, 과학기술 문화수준의 제고, 기술교육 및 인력양성 등 정신사상적 측면의 과학기술 통치이념과 전인민의 동원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헌법과 같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대통령(행

25) 국가와 헌법과 과학기술의 관계에 관하여는 오준근, “과학기술행정법학의 정립방안에 관한 약간의 고찰”, 『경희법학』(제37권 제1호),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02, 101면 이하 참조.

정수반)의 과학기술자문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른 점은 북한헌법상의 각 조항들이 민주법치국가적 헌법 원리에 따라 규정되며 보다는 북한헌법 서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김일성 개인의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것에 불과하여 그 법적규범으로서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어 있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2.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법의 주요내용 비교

1) 법의 목표와 이념

우리의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과학기술의 혁신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제1조),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상호 균형적으로 연계·발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제2조).

이에 비해 북한의 과학기술법은 '과학기술발전계획과 과학기술사업의 조직, 과학기술의 심의와 도입, 과학기술의 인재양성과 장려,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제1조), '과학기술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힘 있는 추동력으로서 과학기술 중시노선을 일관 되게 견지하며, 과학기술에서 주체적 입장을 구현하고, 최신 기술을 통해 인민경제를 현대화·정보화하며, 자체적인 연구개발과 선진기술의 도입을 조화시키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기본이념 내지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2조 내지 제7조). 결국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법이 지향하는 기본목표는 남과 북이 유사하지만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이념과 가치는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과 인류공헌이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세계 지향적이라면, 북한은 자체의 과학기술발전이라는 국가영역내의 목표에 머물고 있다고 하겠다.

2)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

국가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법은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되, 기본계

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동 계획에는 과학기술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과학기술투자확대, 과학기술연구개발 추진, 정보·인력 등 기반확충,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 촉진, 기초과학진흥 및 국제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매 5년마다의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또한 국가계획과는 별도로 '매 5년마다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동 계획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과학기술기반구축의 지원,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지방의 과학기술인력·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 정보유통체제 구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이외에도 국가과학기술 정책추진체제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의 주요정책·연구개발계획 등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되, 동 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과 부위원장(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며(제9조),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 주어 소관 과학기술시책 및 과학기술관련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북한은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발전계획은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계획'으로서(제9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과학기술발전의 주요방향과 도달목표, 실현방안 등을 담은 과학기술발전전략을 작성하여 내각의 비준'을 받고(제10조), 동 '과학기술발전전략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반영할 주요부문과 대상, 도달목표와 내용, 투자규모 등을 담은 과학기술발전계획 작성지도서를 만들어 관련기관에 시달'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또한 과학기술발전계획은 '국가계획과 기업소·단체 등의 부문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하되(제12조), 국가계획은 '해당기관·기업소·단체가 지도서에 따라 제출한 초안을 국가계획기관이 국가과학기술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 검토·비준'하며(제13조), 부문별 계획은 '국가계획에 따라 해당기관·기업소·단체가 제반 보장조건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작성된 계획은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 그리고 '해당기관·기업소·단체는 비준, 등록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이상에서 보듯이 과학기술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국가의 중장기 과학기술발전전략에 따라 국가차원의 종합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으로 나누어 수립하고 각 계획에는 과학기술발전의 기본방향, 주요 추진목표와 전략, 과학기술 투자 규모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계획수립의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는 남북이 유사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수립체계나 계획, 통제방식이 지나치게 당에 의존적이어서 자율성이 배제되고 있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²⁶⁾ 즉, 우리가 각 부처별로 수립·추진되는 분산형 체제라면 북한은 당의 목표와 방침에 따라 전체가 일체로 수립·추진되는 집중형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경우 기초과학과 응용연구의 조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비해, 북한의 경우 국가경제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실용적 차원의 응용적인 고안이나 기술개발에 치중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⁷⁾

3)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과 지원

국가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각종 연구개발의 추진 및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법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성과의 확산·실용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되(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복방지 및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와(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등을 검토·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의2). 또한 정부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주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는 등 과학기술을 예측'하고(제13조),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것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술영향평가'와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하는 '기술수준평가'를 시행하여(제14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혁신의 기초가 되는 '기초과학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며(제15조),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세제·금융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제16조),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업·대학·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 및 민·군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 또 국제사회의 공헌과 국내 과학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연구개발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과학기술협력시책'을 추진하며(제18조), '남북 간의 과학기술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조).

북한은 연구개발의 추진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사업은 과학기술발전의 필수적 요구이므로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기관·기업소·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맞게 과학기술사업

26) 북한의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특성에 관하여는 김계수외, 북한의 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 인력양성체계,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9, 58면 이하 참조.

27)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북한개요 <<http://unibook.unikorea.go.kr/>> 참조.

을 추진'하되(제16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기술관리와 새기술도입 등에 관한 경영관리평가기준을 수립'하고(제22조), '기술지령체계에 따라 기술관리를 강화하며, 기술경제적 지표를 개선함은 물론, 기술공정과 설비·동력·품질관리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²⁸⁾에 맞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또한 해당기관·기업소 등은 '현대적 기술에 의한 기술개선을 추진'하고(제24조), 과학기술자와 생산자에게 기술혁신과제를 주어 '발명, 창의 고안, 합리화안이 촉진'되도록 하며(제25조),²⁹⁾ '기술경제적 효과가 높은 지적제품을 창조·유통'하도록 하고 있다(제26조). 또 연구기관들 사이의 '공동연구와 협동연구를 조직'하며(제28조), 중요 과학기술부문에서 과학기술역량과 물질 기술적 수단을 동원·이용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연구중심을 조직'하도록 하고 있다(제29조). 이외에도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경제지도기관, 무역기관은 '특허기술수입, 합영합작기업 창설, 과학기술정보수집 등을 통해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하고(제31조), '외국 및 국제기구들과 교류협력'을 발전시키며(제32조), 과학기술활동과 발전수준을 객관적·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학기술통계지표'를 해마다 집계 분석하고, 과학기술통계자료에 따라 과학기술활동을 평가하는 '과학기술연보'를 해마다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이상의 내용과 같이 연구개발의 추진 및 이를 위한 환경의 조성과 관련하여 남북은 거의 유사한 규정내용을 보이고 있다. 즉,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른 연구사업의 수립과 추진,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동연구와 국제협력의 촉진, 과학기술의 예측과 분석 등에 있어서 서로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연구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및 관련예산의 심의조정과 민간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단위기관의 기술관리 및 기술경영의 평가, 과학기술문제해결을 위한 기술돌격대활동의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이는 우리가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종합조정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적인 기술지원시책을 추구한다면,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북한당국의 체계적 지령과 향도 하에 일사불란한 연구사업 추진시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양성

28) 북한의 국가표준제도에 관하여는 서상욱외, "북한의 국가표준기술과 남북표준협력 방안", 「북한과학기술연구」(제1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3.7, 131면 이하 ; 윤덕균, "남북한 산업 표준 통일 전략", 「북한과학기술연구」(제4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6.3, 93면 이하 참조.

29) 북한의 발명특허현황 및 그 기술동향에 관하여는 최현규, "북한의 발명특허제도와 최근 기술동향 분석", 「북한과학기술연구」(제1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3.7, 1-20면 참조.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의 핵심요소인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우리법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함은 물론, 연구개발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며(제21조),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 또한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지원을 양성·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제23조)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방안과 지원시책'(제24조)을 세우고 추진하며, '과학 영재의 조기발굴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제25조).

이에 대하여 북한법은 과학기술사업조건의 보장은 과학기술사업의 선행공정으로서 '국가 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등은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리며',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기업소 총소득의 일정 뜻을 과학기술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제49조).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을 장려하는 것은 과학기술사업의 전도를 좌우하는 근본조건이므로,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교육기관 및 해당기관·기업소·단체는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를 계획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며(제41조), 국제학계가 인정하는 과학자, 기술자를 계획적으로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기초 및 첨단과학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부문에 양성생을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제42조). 또한 과학자·기술자의 자질제고를 위해 '재교육체계를 바로 세우고 과학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제43조), 과학자·기술자는 '자격급수시험에 의무적으로 응시'하도록 하고(제44조),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을 발표한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제45조), 과학원 원사·후보원사는 '해당 과학기술부문의 발전을 학술적으로 주도하며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고 창발적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책임성과 역할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제46조). 이외에도 국가는 과학기술발전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명예칭호를 비롯한 표창'을 하며(제47조), 과학기술적 성과로 국가에 경제적 이익을 준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금을 주도록 하여 '공로 있는 과학자·기술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8조).

이와 같이 과학기술투자 및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 있어서는 남과 북이 모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그 장려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북한인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과학기술발전을 성취하려는 북한당국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5) 과학기술기반의 강화 및 환경조성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각종 기반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인프라의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법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며(제26조),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제27조),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시책'을 추진하며(제28조),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곳에 모여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과학 연구단지 등을 조성 및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9조).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과학기술이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제30조),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와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과학기술인이 이룩한 업적과 우수성과에 대하여는 적절히 보상'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제31조). 이외에도 국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지원 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을 적극 육성'하며(제32조),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이를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제33조).

북한법도 이와 같은 과학기술기반 환경의 조성에 관하여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과학연구기관은 중앙과학연구기관과 성·중앙기관·대학·기업소에 두고 그 조직은 해당 기구조직기관이 담당하되(제17조) '기초 및 첨단과학기술연구기관'은 중앙과학연구기관과 해당 대학에 두어 국가예산으로 운영하고(제18조), '응용부문의 연구기관'은 중앙과학연구기관과 해당 성·중앙기관·기업소에 두고 반독립채산제 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 과학연구지원기관으로서 설계기관은 부문별로 조직하되 최신기술과 컴퓨터에 의한 설계방법을 도입하여 설계의 질과 속도를 보장하며(제20조), 기술봉사기관은 해당기관에 두되 '과학기술정보의 수집과 유통, 새 기술도입과 관련한 상담·협조' 등을 담당하며 외국의 과학기술도서와 잡지를 도입하여 과학기술정보자료기지와 컴퓨터정보서비스망을 현대적으로 구축하여 정보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제21조 및 제53조).³⁰⁾ 또한 중요 과학지구와 과학연구기관 및 대학에는 '인재양성, 연구개발, 생산, 수출이 일체화된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0조), 과학연구설비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등은 과학기술부문의 물질적 토대를 강화하고 과학연구사

30) 북한의 과학기술정보유통정책 및 관련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최현규, "북한의 과학기술정보 유통 구조", 「북한과학기술연구」(제2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4.3, 1-20면 참조.

업에 필요한 설비·자재를 제때 보장'하며(제50조), '최신 과학연구설비의 이용률을 높이고 여러 기관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2조). 이외에도 해당기관은 실력 있는 대학 및 박사원 졸업생을 '과학기술부문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며(제51조), 노동행정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과학자·기술자들에게 사회적 과제를 주거나 과학기술사업 외에 동원시키지 말도록 하고(제54조), 과학자·기술자들의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며 그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5조).

이상에서 보듯이 남북은 정보유통체계 구축,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 연구단지의 조성, 과학연구·지원기관의 설치와 운영, 과학기술인에 대한 우대문화 조성 등 과학기술기반 및 환경의 정비와 관련한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하여는 남과 북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과학연구·지원기관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우리가 국가지원의 공공연구기관 외에 민간차원의 과학기술 진흥 및 학술연구지원과 관련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도 그 육성·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 과학연구지원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그 특성에 따라 기초 및 첨단연구기관은 국가예산으로, 응용연구기관은 독립채산제 또는 반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³¹⁾

6) 과학기술심의 및 지도통제

북한법은 우리법과 비교하여 우리가 규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새로 연구한 과학기술의 평가와 생산과정에의 도입, 해외로부터의 과학기술도입 및 기술수출입, 발명·특허·창의고안과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성과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각종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도와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의 심의와 도입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을 생산에 적용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기관·기업소·단체는 새로 연구했거나 외국에서 들여오는 과학기술을 정확히 심의하고 제때에 도입하되(제34조), 과학기술 심의는 각각의 역할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와 국가발명심의위원회, 해당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가 담당하며(제35조 및 제36조), 과학기술심의와 도입심의는 기관·기업소·공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원회가 제때 실시하고(제37조), 심의에서 통과된 과학기술은 해당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기술은 도입할 수 없

31) 북한의 과학기술 연구기관 운영 실태에 관하여는 김계수외, 앞의 책, 64면 이하 참조.

도록 하고 있다(제38조). 또한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은 국가계획에 따라 도입하되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도입계획을 세워 의무적으로 실행하고(제39조),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연구기관·기업소·단체 사이의 계약에 따라 등록된 과학기술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제40조).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담보로서 (제56조),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수행하되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국가의 과학기술사업을 장악 지도하고(제57조),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부문과학원과 연구소·경제기관·기업소·단체의 과학 연구사업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제58조).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기관이 수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작성과 실행, 과학기술사업의 조직, 과학기술심의와 도입, 과학기술인재양성과 장려,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을 엄격히 감독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9조). 만일, 과학기술심의를 받지 않고 기술공정과 설비를 개조·건설하거나, 기술수출입을 하거나, 기술규정·표준조작법을 지키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키고(제60조), 과학연구결과를 과장하였거나 공민의 저작·발명·특허·창의고안을 표절 또는 침해하여 학위나 급수를 사정받은 경우에는 이를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제61조). 이외에도 과학기술법을 위반하여 과학기술발전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기업소·단체의 책임자와 개별 주민에게는 그 정도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제62조).

이는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이 당과 국가로부터의 수직적 체계에 의하여 수립되고 추진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사회주의경제가 엄격한 계획과 통제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V. 결론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과 북에 있어서 국가발전정책상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의미와 중요성은 최근 들어 매우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과학기술 정책목표의 달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관련 법제를 어떻게 정비하고 운영하는가는 국가발전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남과 북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법제를 체계적이며 전략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 배경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기존의 법령체계를 21세기를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비하고 각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정책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 북한의 경우 심각한 인민생활경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개혁과 개방을 통해 낙후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조속히 회생시키고자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과학기술법의 재정비는 미래발전을 위한 전략적 차원보다는 경제난 극복이라는 극히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양 법제의 운영방향은 물론 그에 기초한 각종 정책의 수립, 국가예산의 배분과 투자, 관련조직 및 행정체계의 운용 등에 있어서 정책적 합일성을 도출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남북 과학기술협력은 상호 보완적·전략적 협력에 입각하기 보다는 민족 간의 호혜적 상부상조의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운영상의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조절하려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 들어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남북 간의 과학기술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적 기반인 관련법제가 형식적 측면은 물론 실질적 효과 측면에서도 상호 접근 및 통일되도록 정비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런데 남북의 현행 과학기술 기본법제의 정비와 운영은 외형적 측면에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으며 상호 접근해 갈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수단으로서의 제도적 기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체제상의 특성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법치주의적인 원리에 의하기 보다는 당국의 정책적 입장과 지도자의 명령에 입각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보다는 선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호간의 법제를 통일하고 연계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현 상태에서 양 법제간의 정합 가능성성이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남북 간의 과학기술 관련법제에 대한 해석과 적용 등 상호이해와 접근을 위한 학계차원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는 앞으로 과학기술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다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장래의 남북통일시대의 법제통일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남북의 과학기술 관련 법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함에 있어서는 수많은 개별 법률은 물론, 관련 하위법령을 포함한 종합적인 내용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에 관한 정보와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 글의 경우도 그

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실제적인 내용연구가 미흡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남북이 과학기술 관련 법제에 대한 정보교류와 학술행사 개최 등 법학적 측면에서의 남북 협력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념과 가치, 체제의 측면을 넘어서 보다 실질적인 법제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 법제간의 상호 연계·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공청회 자료집, 2000.6.1.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김계수외, 북한의 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 인력양성체제,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9.
- 김재호, “과학기술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 원자력법령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제9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 박정원, 북한 김정일체제의 법제정비 현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2.
- 박정원,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과 과학기술법”, 「북한과학기술연구」(제4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6.3.
- 서상목외, “북한의 국가표준기술과 남북표준협력 방안”, 「북한과학기술연구」(제1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3.7.
- 이석기, “북한의 산업정책과 과학기술중시정책”, 「북한과학기술연구」(제2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4.3.
- 오세정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재구축과 향후 전개방향”,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재구축과 과학기술부의 기능개편」,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중앙일보 공동주최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2004.3.4.
- 오준근, “과학기술행정법학의 정립방안에 관한 약간의 고찰”, 「경희법학」(제37권 제1호),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02.
- 윤권순, “북한의 연구개발투자성과에 대한 보호제도”, 「북한과학기술연구」(제2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4.3.
- 윤덕균, “남북한 산업 표준 통일 전략”, 「북한과학기술연구」(제4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6.3.
- 이경원,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추진경위와 주요쟁점”, 한국기술혁신학회 2000년도 추계 학

- 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9.
- 이경희외, 과학기술혁신과 법, 세창출판사, 2001.
- 이경희외, 과학기술법제정사 -한중일교류를 중심으로-, 세창출판사, 2004.
- 이부하, “영토조항에 대한 규범적 평가”, 「통일정책연구」(제15권 1호), 통일연구원, 2006.6.
- 이춘근,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개혁”, 「북한과학기술연구」(제2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4.3.
- 장명봉외, 북한의 대외경제개방과 관련법제 정비동향, 한국경제연구원, 2001.
- 정현수외, 과학기술관계법의 이해, 푸른세상, 2001.
- 제성호, “통일에 대비한 지식재산권 기반조성전략 -북한의 산업재산권 법제 인프라에 대한 이해중심-”, 「통일정책연구」(제13권 1호), 통일연구원, 2004.
- 지봉도,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해결에의 적용법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제14권 2호), 통일연구원, 2005.
- 최현규, “북한의 발명특허제도와 최근 기술동향 분석”, 「북한과학기술연구」(제1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3.7.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5.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웹페이지 <<http://unibook.unikorea.go.kr>>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웹사이트 <<http://www.nktech.net>>

윤종민

충북대학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법제”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기술경영정책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과학기술 관련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제도, 지식정보인프라 정책 등이다.